

●**울산지청공고 제2026-5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취소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신아 주식회사 (제2019-210호)	김*정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 *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제2호	2차 경고 미개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인증제한(3년)	2026.7.20.

끝.